어 장 구 역 등 재 결 신 청 서						처리기간 시·군·구14일 시·도 14일
신청이	① 성 명			② 주민등록번호		_
	③ 주 소					
피신 청인	④ 성 명			⑤ 주민등록번호		_
	⑥ 주 소					
7 0	거장의 표시	(별지도면과 같음)				
⑧ 분쟁의 내용						
⑨ 재결신청의목 적 과 내 용		목 적				
		내 용				
10 7	기 타					
수산업법 제86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
			년	월 일		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시장·군수·구청장 시·도지사 귀하						
구 비 서 류 1. 관계인과의 협의 경위서 1부 2.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어장도 각 1 부 3. 신청서부본(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) 1부						수수료
						1,600원

